
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| | |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 | 보도 | 11.7(월) | 조간부터 보도가능 | 배포 |
| 책임자 |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기환(02-2100-2660) | 담당자 | 김영대 사무관 (02-2100-2672) | |
| |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민우(02-2100-2650) | | 김동현 사무관 (02-2100-2654) | |
| |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창국(02-2100-2860) | | 박보란 사무관 (02-2100-2865) | |
| | 금감위 자본시장감독국장 장준경(02-3145-7580) | | 박봉호 자본시장제도팀장 (02-3145-7616) | |
| | 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 강보선(02-3774-3106) | | 정종문 중소기업지원부장 (02-3774-3501) | |
| |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김인(02-531-1800) | | 김옥선 전자상거래팀장 (02-531-1820) | |
| |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정은윤(02-2003-9014) | | 이도연 자율규제기획부장 (02-2003-9370) | |
| |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서중균(02-2090-9110) | | 황인정 중소벤처팀장 (02-2090-9115) | |

제 목 :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『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』

- 창업·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클라우드펀딩 제도는 그간 89개사가 성공하는 등 시장에 안착 중
-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
 - ① 일반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
 - ② 전용 거래시장(KSM)을 개설하고, 시장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
 - ③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

I.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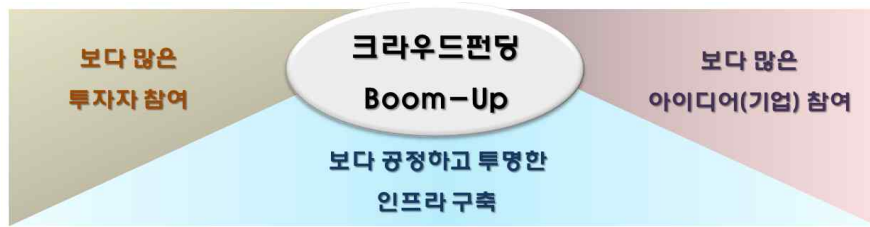
- ① (추진 배경) '16.11.3일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「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」을 논의하여 확정
 - ① 클라우드펀딩 시행 이후('16.1.25일), 3차례의 현장간담회*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
- * 클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(5.4), 6개월 간담회(7.28), 금요회(10.20) 등

- ②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, 클라우드펀딩은 창업·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
 - ③ 향후 클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- ② (그간의 성과) 10.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, 89개사가 펀딩에 성공 (143억원, 4,498명, 성공률 46%)
 - * 제조(31건)> IT(22건)> 음식·광고(11건)> 문화(8건)> 농식품(6건)> 교육(5건)> 부동산(2건)
 - ① 제도초기 약 20%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, 아이디어의 약 절반(46%)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
 - ②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.6억원,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 (일반투자자 기준)이며,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%
 - ③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,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·운영중
- ③ (발전 과제)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,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
 - 또한, 클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

<클라우드펀딩 제도 개요>

- ① (개요) 대중(crowd)으로부터 자금을 모아(funding)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'16.1.25일부터 시행
 - ① 집단지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의 심시일반 투자
 - *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80% 이상인 경우 펀딩성공 → 증권 발행(집단지성의 검증)
 - ②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창업·중소기업이 주요 대상
 - ③ 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,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등 제한
- ② (제도 지원)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 - ① 클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) 별도 신설 →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
 - * 인가제 → 등록제 / 자기자본 30억원 → 5억원 / 일부 건전성규제 적용배제
 - ②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“기업투자정보마당”을 개설하고, K-OTC BB(계사판)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
 -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,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 후속 투·융자 지원
 - * 성장금융 K-클라우드펀드,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, 희망펀딩대출, 매칭투자조합

II.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(상세 : 별첨)



1. (수요)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: 수요기반 확충

①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유인

- ① 일반인에게 SNS, 인터넷 포털,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·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*

* (현행)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
→ (개선)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·중개업체명, 기본사업 내용,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

- ② 유망기업의 펀딩 전, On-line IR 활동 지원(유튜브 방송 등)
- ③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 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 확대

② 투자자 범위 확대

- ①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'적격엔젤투자자'의 범위를 확대*
*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·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
: (현행) 2년간 1건 1억원 or 2건이상 4천만원 → (개선)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
- ②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(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)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*
* (일반) 200만원 / 500만원 ↔ (소득적격투자자) 1천만원 / 2천만원

③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

- 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)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
* 한국거래소에 11월중 개설 예정
- ②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(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) 규제 적용 배제

④ 청약 시스템(Bankpay)의 전면적 개편

-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,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

2. (공급)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 : 다양한 투자플

①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

- 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*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(7년)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*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
- ② '기업투자정보마당'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,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

②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

- ①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(50억원, 기은·성장금융)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- ②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·융자 지원 확대*
* ① 성공기업에 대한 '희망펀딩대출' 보증요율 우대수준확대(Δ0.4 → Δ0.5%p)
②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, 보증한도 소진시 추가신용대출 지원
③ Seeding 투자기업 펀딩성공시, 기업은행 영업점과 1:1 매칭하여 원스톱 지원
④ Seeding 투자기업 펀딩실패시에도, 희망펀딩대출 지원대상에 추가

③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

- ① 일정규모 이상 편딩 성공기업*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, KSM 등록기업(6개월 이상)은 기준을 추가 완화**

* 3억원 이상(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) and 50인 참여(전문투자자 2인 포함)

** 1.5억원 이상(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.75억원) and 20인 참여(전문투자자 2인 포함)

- ②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클라우드 편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(문화부 협의)

* (현행) 공모 문전사 설립불가에 따라 별도 SPC 설립(설립비용 및 법인세 부담)
→ (개정) 공모 문전사 허용 : 별도 SPC 없이 편딩 가능, 법인세 감면 적용

3. 투명하고 공정한 클라우드편딩 시장 형성

①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

- ①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의무화
- ② 편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 검토
- ③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(월→분기)
- ④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 게재

② 클라우드편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

- ①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, 편딩 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(archive) 구축(클라우드넷)
* 중개업자 중도해산·철회시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정보제공
- ② 유사 클라우드편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속
- ③ 중개업자·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

3. 향후 계획

- 클라우드편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

- 시행령 및 감독규정(금융투자업규정,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)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
- 광고 규제 관련, 자본시장법 개정안('16.6) 국회 통과 노력

※ 별첨 : 「클라우드편딩 발전방안」

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|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 | 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창업·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

2016. 11. 7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검토 배경 | 1 |
| II. 현행 클라우드펀딩 제도 | 2 |
| III. 지난 9개월간 성과 | 4 |
| IV. 보완 및 발전과제 | 7 |
| V. 클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| 8 |
| 1. 투자자 참여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| 9 |
| 2. 클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... | 13 |
| 3.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 | 17 |
| VI. 향후 추진 일정(안) | 19 |

I. 검토 배경

◆ **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('16.1월) 9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,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발전방안 모색**

① **(개요)** 대중(crowd)으로부터 자금을 모아(funding)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'16.1월부터 시행

○ **집단지성(The wisdom of crowd)**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**십시일반(十匙一飯)** 투자 (증권형)

⇒ 투자자에게 수익을, 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

② **(성과)** 10.31일까지 193건 펀딩에 6,036명 투자자가 참여하여 현재 89건이 펀딩에 성공 (성공률 : 46%)

○ **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고,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후속투자 유치사례도 나오는 등,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둠**

⇒ 크라우드펀딩이 창업·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

③ **(의견수렴)** 3차례 현장간담회* 등을 통해 시행성과 점검 및 운영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

*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(5.4), 6개월 간담회(7.28), 금요회(10.20) 등

⇒ “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”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

II.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

① **(대상기업)**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내 창업기업

○ 단, 기술개발에 초기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,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업력 제한없이 가능

② **(모집방법)** 중개업자가 우수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알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 자금을 펀딩

① **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‘공모’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모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, →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**

*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,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·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간소화

② **모집금액이 목표금액 대비 80% 이상인 경우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증권(주식, 채권) 발행(집단지성에 의한 검증)**

③ **(발행한도)** 과도한 투자위험 예방을 위해 기업당 모집 금액 한도 설정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투자금액 제한

① **기업당 모집한도는 연간 7억원 이하**

② **개인당 투자한도는 소득 및 투자전문성에 따라 차등**

<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>

| 구분 |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| 연간 총투자한도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투자자 | 200만원 | 500만원 |
| 소득적격 투자자* | 1,000만원 | 2,000만원 |
| 전문투자자 | 제한 없음 | |

*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,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초과인 자

④ (지원제도)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

❶ 클라우드펀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을 별도 신설하고,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 대폭 완화*

*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: 인가제 → 등록제 / 자기자본 30억원 → 5억원 / 경영·재무건전성 등 일부규제 적용배제

❷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1년 부여

❸ 정책금융기관 등(기은·산은·신보·기보·혁신센터 등)이 유망 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“기업투자정보마당” 개설

* 투자추천기업 수 : 67개(1월말) → 144개(3월말) → 228개(6월말) → 381개(10월말)

❹ 클라우드펀딩 기업 증권의 거래지원을 위하여 K-OTC BB(계시판)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

❺ 정책금융기관 등이 펀딩 청약단계에서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, 펀딩성공 기업에 후속 투·융자 지원

<클라우드펀딩 주요 지원프로그램>

| 프로그램명 | 규모 | 특징 | 주체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| 100억 | 청약단계 투자 | IBK은행 |
| ② IBK 희망펀딩대출 | 1,000억 | 성공이후 대출 | IBK은행, 신·기보 |
| ③ IBK 매칭투자조합 | 100억 | 성공이후 투자 | IBK은행, IBK캐피탈 |
| ④ 성장금융 (K-클라우드펀드 등) | 260억 | 청약단계 투자 성공이후 투자 | 성장금융 |

Ⅲ. 지난 9개월간 성과

◆ 시행 9개월, 89개사가 펀딩에 성공(143억원, 4,498명)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

① (성과) 193건 중 89건 성공(성공률 : 46%)하며 143억원 조달

❶ 투자자들의 지속적 관심으로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 중

- 미국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 20%대의 펀딩 성공률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

❷ 펀딩성공 이후, 해외수출계약 체결*, 후속투자 유치** 등 후광효과를 누리는 사례도 발생

* 마린테크노(화장품제조) : 시행 첫날(1.25일) 0.8억 모집성공(1호) 이후 한·미 정상 외교를 계기로 현장 수출계약 체결(5년간 20만불)

** 모션블루(스마트블록제조) : 0.7억원 모집성공(3.16일) 이후 정책금융기관(IBK금융 그룹 매칭투자조합)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(10억원)

<월별 클라우드펀딩 주요 실적(10.31 기준)>

(단위 : 개사, 억원, 건)

| 구분 | 펀딩 시도 | | 펀딩 성공 | | | 펀딩 성공률(%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| 기업수 | 청약금액 | 기업수 | 청약금액 | 발행(예정)금액 | |
| 출시~2월 | 32 | 15.30 | 10 | 11.45 | 11.35 | 31.6 |
| 3월 | 23 | 21.40 | 14 | 24.46 | 22.77 | 60.1 |
| 4월 | 17 | 17.39 | 8 | 13.52 | 13.42 | 47.0 |
| 5월 | 25 | 17.28 | 12 | 18.88 | 18.14 | 48.0 |
| 6월 | 25 | 24.65 | 14 | 23.70 | 22.33 | 56.0 |
| 7월 | 13 | 20.10 | 8 | 17.74 | 16.82 | 61.5 |
| 8월 | 17 | 19.20 | 7 | 17.74 | 16.38 | 41.2 |
| 9월 | 16 | 10.80 | 7 | 10.45 | 9.74 | 43.8 |
| 10월 | 25 | 14.35 | 9 | 12.79 | 12.53 | 36.0 |
| 계 | 193 | 160.47 | 89 | 150.73 | 143.48 | 46.1 |
| (월평균) | (21) | (17.83) | (10) | (16.75) | (15.94) | |

② (기업별) 평균조달금액은 1.6억원 (기업별 모집한도 7억원)

- ① 대체로 2억원 미만 소규모 편당이 많고, 특히 제조·IT 부문 편당건수가 많음 (총 89건중 54건, 60.7%)
- ② 문화·농식품 분야의 경우 금액대별 다양한 편당으로 평균조달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(약 2.3억원)

(10.31 기준, 단위: 건수, 억원)

| 구분 | 제조 | IT/ 모바일 | 교육 | 문화 | 에너지 | 기 타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|
| | | | | | | 부동산 | 농식품 | 음식·광고등 |
| 0~1억 | 13 | 8 | 2 | 2 | 1 | 2 | 2 | 6 |
| 1~2억 | 11 | 9 | 3 | 4 | - | - | 1 | 2 |
| 2~3억 | 2 | 2 | - | - | 1 | - | - | 1 |
| 3~4억 | 4 | 1 | - | 1 | - | - | 1 | - |
| 4~5억 | - | - | - | - | 1 | - | - | 1 |
| 5~6억 | - | 1 | - | 1 | - | - | - | 1 |
| 6~7억 | 2 | 1 | - | - | - | - | 2 | - |
| 건 수 | 32 | 22 | 5 | 8 | 3 | 2 | 6 | 11 |
| 금 액 | 51.4 | 31.1 | 4.4 | 13.0 | 7.4 | 1.0 | 19.0 | 16.2 |
| 평 균 | 1.6 | 1.4 | 0.9 | 1.6 | 2.5 | 0.5 | 3.2 | 1.5 |

③ (투자자별) 일반 투자자 참여율은 92% 수준 (금액은 41%)

- ① 개별기업별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①일반투자자 142만원 (투자한도 200만원), ②소득적격투자자 647만원(투자한도 1천만원), ③전문투자자 3천5백만원(투자한도 없음)

(10.31 기준, 단위: 백만원, 명)

| 일반투자자 | | | 소득적격투자자 | | | 전문투자자 등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금액 | 인원 | 평균 (한도) | 금액 | 인원 | 평균 (한도) | 금액 | 인원 | 평균 (한도) |
| 5,872 (41%) | 4,124 (92%) | 1.42 (2.00) | 1,041 (7%) | 161 (4%) | 6.47 (10.00) | 7,434 (52%) | 213 (4%) | 34.90 (없음) |

② 문화·농식품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비중이 제조·I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- 이는 문화·농식품 분야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사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

(10.31 기준, 단위: 명, 억원)

| 구 분 | 인원 | 금액 | 일반투자자 | | 소득적격 투자자 | | 전문투자자 등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| 인원 | 금액 | 인원 | 금액 | 인원 | 금액 |
| 제조 | 1,508 | 51.44 | 1,383 | 19.71 | 62 | 4.26 | 63 | 27.47 |
| IT/모바일 | 694 | 31.11 | 592 | 7.85 | 27 | 1.79 | 75 | 21.47 |
| 교육 | 95 | 4.41 | 75 | 1.30 | 9 | 0.70 | 11 | 2.41 |
| 문화 | 819 | 12.92 | 781 | 8.64 | 23 | 1.03 | 15 | 3.25 |
| 에너지 | 254 | 7.42 | 231 | 3.47 | 12 | 0.75 | 11 | 3.20 |
| 부동산 | 42 | 1.00 | 37 | 0.63 | 1 | 0.10 | 4 | 0.27 |
| 농식품 | 803 | 18.98 | 776 | 13.91 | 21 | 1.38 | 6 | 3.69 |
| 음식, 광고 등 | 283 | 16.19 | 249 | 3.21 | 6 | 0.40 | 28 | 12.58 |
| 합 계 | 4,498 | 143 | 4,124 | 58.72 | 161 | 10.41 | 213 | 74.34 |

④ (투자중개업) 전업 8개사, 겸업 6개사 총 14개사 영업중

- ① 업체별 평균성공건수는 6건이나, 제도도입 이전부터 중개사업을 준비한 상위 2개 전업사에 실적 집중
- ② 후발주자들의 편당실적은 낮은 편이나, 향후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편당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

(10.31 기준, 단위: 건수)

| 전업 중개업자 | | | | 겸업중개업자 (증권사 등) | | | |
|---------|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
| 업체명 | 등록일 | 추진 | 성공 | 업체명 | 등록일 | 추진 | 성공 |
| 와디즈 | 1.25 | 57 | 26 | IBK | 3.17 | 17 | 7 |
| 오픈트레이드 | 1.25 | 37 | 19 | 코리아에셋 | 3.17 | 22 | 10 |
| 유캔스타트 | 1.25 | 9 | 2 | 유진 | 6.15 | 2 | 1 |
| 인크 | 1.25 | 16 | 7 | 키움 | 6.15 | 2 | 1 |
| 위리치펀딩 | 1.25 | 4 | 2 | 오마이컴퍼니 | 3.17 | 21 | 9 |
| 오마이컴퍼니 | 3.17 | 21 | 9 | KTB | 7.7 | 1 | 1 |
| 더불어플랫폼 | 6.15 | 1 | 1 | 우리종금 | 9.29 | 1 | 0 |
| 펀딩포유 | 7.28 | 3 | 3 | | | | |
| 소 계(8개) | | 148 | 69 | 소 계(6개) | | 45 | 20 |

IV. 보완 및 발전과제

◆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

- 1 (투자자 확대)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
 - 1 누구든지 크라우드펀딩을 쉽게 접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정보 제공을 확대
 - 2 편리한 투자환경 제공과 투자자금의 안정적 회수 지원을 통해 투자접근성 제고
- 2 (참여기업 확대) 크라우드펀딩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도록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
 - 1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및 후속투자 지원 강화
 - 2 중개업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
- 3 (투명하고 공정한 시장)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제도개편 등 필요
 - 1 중개업자가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
 - 2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V.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

<기본방향>

◆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



1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

◆ 보다 많은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, 청약시스템 등 전면 개편

(1)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광고규제 완화

□ SNS, 인터넷 포털,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클라우드 펀딩업체명, 기본사업내용, 펀딩기간,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

○ 현재 클라우드펀딩 관련 세부내용이 개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*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펀딩 참여에 한계

*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에 따라 SNS,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(§117의9) 및 동시행령 개정

(2) 클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

□ 실제 펀딩시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 기업에 대한 펀딩 전 On-line IR 활동 지원

* '16.9월부터 한국성장금융사가 토크쇼 풀투(풀지말고 투자하라, 유튜브·팟캐스트)와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IR 지속(매주 수요일 방송) 중

(3)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

① 외국인 투자자(특히, 투자등록증 기발급 투자자*)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

* '16.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43,000명 수준

① 외국인도 펀딩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넷 영문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

② 겸업 증권사*를 통해 해당 증권사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 추진

* IBK투자증권, 코리아에셋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KTB투자증권 등 5개사

②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적극 지원

① 클라우드넷 영문 홈페이지에 성공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 번역·게재 서비스를 향후 지속적 확대

② 해외 엔젤투자자 협회를 대상으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안내 메일 주기적 발송

* 7월 미국·영국·호주 엔젤투자자협회 대상 안내 메일 既 발송

③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펀딩 성공기업 해외진출 지원

(4) 전문·적격투자자 범위 확대

- ①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'적격엔젤투자자'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창업자·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(2년간) | 현행 | 확대 |
| | 1건 : 1억원 | 1건 : 5천만원 |
| | 2건이상 : 4천만원 | 2건이상 : 2천만원 |

* 엔젤투자협회도 '적격엔젤투자자'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(16.3월)

▶ (요조치사항) 증발공 규정(§2-2의6) 개정

【현행 '전문투자자 등'의 범위】

- 은행, 보험사, 증권사,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
- 연기금, 공제법인,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법인
- 전문가(회계법인, 창투자 등), 투자전문가(개인투자조합, 적격엔젤투자자 등) 등

- ②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**으로 투자한도 확대 적용

*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, 사업소득+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

**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(개별기업 / 총투자)
: (일반) 200만원 / 500만원 ↔ (소득적격투자자) 1천만원 / 2천만원

- 투자관련 자격증*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권유,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 경력자**에 대해 허용

* 금융투자분석사(RA), 투자자산운용사(IM), 재무위험관리사(FRM), 투자권유자문인력, 국제투자분석사(CIIA), 국제재무분석사(CFA) 등

**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시행령(§118의17) 개정

(5)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) 개설 : 신속한 회수 지원

- 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 시장을 개설하여 투자자 자금회수를 적극 지원

①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함으로써 주식 거래 가능

- 다만,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도, 영업정지, 결산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발생시 등록 취소

②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(발행 후 1년) 규제 적용을 배제

- ② KSM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상장시, 특례를 적용하여 상장 부담도 경감(상세 후술)

▶ (요조치사항) 증발공규정(§2-2조의6) 개정 및 KSM운영규정 제정

(6) 청약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

- ①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손쉽게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 구축

* 사용자 입력창에 정보별 안내메시지를 게재하여 소비자 혼란을 감소

- ② 다양한 웹 브라우저(크롬, 엣지 등)를 통해 청약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방식에서 오픈웹 결제창 호출방식으로 전면 개편*

* (플러그인) 결제시 ActiveX 설치가 필요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 가능
→ (오픈웹) 크롬 등 다른 Web에서도 ActiveX 등 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가능

- ③ 실제 청약과정에서 투자자 불편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이드라인 제공

2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

◆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확대, 성공기업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강화

(1)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

□ 경영혁신형 중소기업*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등과 동일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
➔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

*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본법에 따라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중 신청에 따라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기업(일명 메인비즈기업)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시행령(§14의5) 개정(기조치)

(2)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

□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기개설(16.1월)된 '기업투자정보마당*'의 내실화 도모 및 검색 기능 개편

* 정책금융기관(기은, 산은, 신보, 기보),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게시하고, 중개업자에 맞춤형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

①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하에 등록 기업 수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, 우수기업 선별·추천 기능도 강화

② 중개업자의 원활한 기업분석 지원을 위해 업종, 매출액, 희망금액 등으로 상세 구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편

(3) 성공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참여 유인 제고

①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등 펀딩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
① Seeding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(50억원, 기은·성장금융)하여 유망기업*의 크라우드펀딩시 Seeding 투자에 적극 참여

* (예) 기업투자정보마당 정보등록 기업, 벤처기업 등

② K-크라우드펀드 기조성액 260억원 중 150억원 이상을 Seeding 투자용으로 사용

②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를 통한 펀딩 참여 Incentive 제고

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'희망펀딩대출' 보증 효율 우대수준을 추가확대($\Delta 0.4\%p \rightarrow \Delta 0.5\%p$)하는 한편,

-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및 보증한도 소진시에도 추가 신용대출 지원 실시*(기은)

* 보증부 대출 금액의 10% 한도내 신용대출 지원

②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Seeding 투자기업인 경우, 추가로 기은 영업점에 1:1로 매칭하여 추가 자금 수요 등 적극 지원 (원스톱 지원)

③ Seeding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하더라도 '희망펀딩대출' 지원 대상*에 추가(기은·신·기보)

* (현행)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만 지원

③ **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보호예수, 코넥스시장 상장 등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을 통한 지원 강화**

- ①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**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(사모)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클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**

* (현행)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되어 후속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

▶ (요조치사항) **증발공규정(§2-2) 개정**

- ② 일정규모 이상*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**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 허용**(지정자문인 선임의무 면제)

- ① 펀딩규모 **3억원** 이상(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) and
- ② **50인 이상 참여**(전문투자자 2인 포함)

- **KSM 상장기업**(6개월이상)에 대해서는 **기준을 추가 완화**

- ① 펀딩규모 **1.5억원** 이상(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7,500만원) and
- ② **20인 이상 참여**(전문투자자 2인 포함)

▶ (요조치사항) **거래소상장규정 개정**

(4) 문화콘텐츠 분야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
- ① **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***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**클라우드펀딩**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* 회사의 자산을 **문화산업의 특정사업**에 운용하고, 그 수익을 투자자·사원·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(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)

- 현재 영화 제작 등 문화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**문화산업전문회사**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할 수는 있으나, 사모만 허용되고 **공모(50인 이상 투자권유)는 허용되고 있지 않음**

- 이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**사업관리자 요건을 시행령*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**

* 예) 1억원 이상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**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등

- 이에 따라 그동안 영화제작 등 **문화산업분야는 별도의 상법상 SPC를 설립하여 클라우드펀딩을 추진함에 따라, SPC 설립비용 및 법인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**

- 앞으로는 **시행령 개정**을 통해 **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**를 허용

- **별도 SPC 설립 없이** 클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지고, **법인세 감면혜택***도 향유 가능

*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배당시 해당금액 만큼 법인세 산정시 소득 공제 적용(법인세법 §51의2)

▶ (요조치사항) **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(17년 상반기)**

- ② **문화콘텐츠 분야의 참여 확대 및 펀딩 참여시 성공률 제고를 위해 펀딩단계에서의 정책적 지원 강화**

- ① **‘마중물펀드’의 기능 정상화**를 위해 **‘컬처투자정보마당’** 등록 문화프로젝트는 반드시 투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

* 기은이 문화콘텐츠 마중물 기능을 위해 조성된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서, 10.31일 현재 집행규모는 2,500만원에 불과

- ② **‘Seeding 전용 펀드’ 조성액** 중 10%(5억원)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

- ③ Seeding 투자를 받은 **우수 문화콘텐츠 기업·프로젝트**에 대한 **후속 자금 지원 강화**

- ① K-클라우드·마중물펀드·기보간 **우수 문화콘텐츠 기업**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, 이를 바탕으로 **공동투자 활성화**

- ② **Seeding 투자 + 클라우드펀딩 성공시**는 기보의 **‘문화산업 완성보증’ 지원요건을 완화**** 적용

* 문화제작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콘텐츠의 완성을 보증하여 자금을 지원하고,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보증을 상환하는 프로그램(최대 50억원)

** 제작비의 **30%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**되어야 신청 가능 → 요건 적용시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금액을 **‘자금조달 확정금액’**으로 인정

3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 등

◆ 건전하고 안정적인 크라우드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
중개업자 책임성 확보, 불법행위 감독 강화 등 추진

(1)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

①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(최소 5억원)의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회계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, 자기자본 산정방식*도 명확하게 규정(감사원 지적사항)

*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+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 포함

▶ (요조치사항) 금융투자업규정(별지 제3호의4) 개정

② 중개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, 펀딩 성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(발행기업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)

○ 다만, 펀딩기업의 지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기업 목록 등을 공시하도록 함

* (현행)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, 자본시장법상 중개업자는 '중개하는 증권'을 '스스로의 계산'으로 취득할 수 없음

▶ (요조치사항) 자본시장법(§117의7) 유권해석으로 가능

③ 전업중개업자는 규모가 작고 투자자 피해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(월→분기)

* 전업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의 영업 상태가 투자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

④ 고수익·고위험의 투자손실 위험성 등을 알리도록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을 게재

(2)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

① 투자자의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조회가 용이하도록 크라우드넷에 종합 투자정보를 게재하는 아카이브(archive) 구축

○ 특히, 중개업자가 중도해산·철회되더라도 '아카이브'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기업정보 제공

▶ (요조치사항) 금융투자업규정(제4-115조), 증발공규정(제2-2조의4) 개정

②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

① 지속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하고, 적발시 수사기관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

* 크라우드펀딩 제도 출범에 맞춰 금감원내 T/F팀을 통해 모니터링 중

② 유사 크라우드펀딩*을 통해 투자자를 유도하는 사기적 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 실시

* 예) 발행인의 주변인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여 성공한 후 발행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등

③ 중개업자와 참여(예정)기업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(예탁원)

① 증권발행 전·후 및 향후 주주관리 전반에 걸쳐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령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·제공

② 중개업자·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용어 설명,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 '크라우드펀딩 업무매뉴얼'을 증보 발간

③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및 신규 중개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업무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실시

IV. 향후 추진 계획 (안)

◆ 클라우드펀딩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

| 구 분 | 조치 필요사항 | 추진 시기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. [투자자] 투자참여 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| | |
| 1. 일반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| 법률 개정 | 지속 추진 |
| 2. 클라우드펀딩 전 홍보 강화 | 제도 개선 | 지속 추진 |
| 3.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확대 및 후속투자 유도 | 제도 안내 | 지속 추진 |
| 4. 클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·적격투자자 확대 | 시행령, 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5. 스타트업 전용시장 개설, 신속한 회수 지원 | 감독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6. 청약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개편 | 시스템 개편 | 12월 |
| 2. [기업] 기업의 클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| | |
| 1. 클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| 시행령 개정 | 완료('16.6) |
| 2.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지원 강화 | 제도 개선 | 12월 |
| 3-1.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 | 제도 개선 | 11월 |
| 3-2. 희망펀딩대출 지원 대상 확대 | 제도 개선 | 11월 |
| 3-3.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지원 확대 | 제도 개선 | 11월 |
| 3-4. ① 성공기업 후속 사모시 보호예수 면제 | 감독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3-4. ②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| 상장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4-1.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규정 개정(문화부) | 시행령 개정 | '17년 상 |
| 4-2. 문화콘텐츠 펀딩단계 정책지원 강화 | 제도 개선 | 11월 |
| 4-3. 문화콘텐츠 후속투자 정책지원 강화 | 제도 개선 | 11월 |
| 3. [중개업자인프라] 제도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 | | |
| 1-1. 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객관적 심사 | 감독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1-2. 중개업자의 펀딩성공 시 지분 취득 허용 | 유권 해석 | 12월 |
| 1-3. 전업중개업자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| 시행세칙 개정 | '17년 상 |
| 1-4.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투자유의사항 고지 | 제도 개선 | 11월 |
| 2-1.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클라우드넷 집중게재 | 감독규정 개정 | '17년 상 |
| 2-2. 유사 클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 감독 강화 | 모니터링 | 지속 추진 |
| 2-3. 중개업자·창업기업 대상 교육·컨설팅 | 체크리스트 제공 | 12월 |